

무배당에이스그린상해보험

보 통 약 관

## 계약의 체결

**제1조(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의 청약과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의 승낙으로 이루어 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일정기간 단위의 분할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청약일(진단계약의 경우는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며, 청약을 거절한 때에는 납입한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예정이율 + 1% <연 8.5%>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제4조에서 정한 책임의 시기가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하거나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2조(청약서부분 및 보험약관의 교부)** ① 회사는 계약체결시까지 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청약서(이하 “청약서”라 합니다)부분 및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분을 별도로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㉒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4조(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㉑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㉒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㉑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 ② 보험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두 사람 이상일 때 다른 사람이 수취할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③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단, 형법상 정당행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④ 피보험자의 뇌질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
- ⑤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의 결과로 상해를 치료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⑥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 ⑦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 ⑧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⑨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⑩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⑪ ⑩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㉒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을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

-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을 오르거나 특수한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
- ②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단,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③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6조(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모집인 등의 청약서 임의기재 행위의 효력)**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한 후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집인등이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 기타 계약내용에 포함될 중요사항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다르게 기재함으로써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③ 계약체결 당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제8조(청약의 철회)** ① 가계성보험(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계약과 단체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에 한하여 계약자는 계약의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우편 철회의 경우 우편물이 회사에 도착한



- ④ 보험가입금액
-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 ⑥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의 ① ↓ 규정에 의하여 책임개시일부터 1년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의 ④ ↓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④ 계약자가 제1항의 ⑤ ⇨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1항의 ⑤ ⇨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파산, 이민, 또는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
- ② 계약자가 그와 고용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해고 또는 교체한 경우

**<용어풀이>**

고용관계라 함은 피고용인이 고용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인은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관계를 말합니다.

**제11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12조(계약의 무효)**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보험료의 납입주기)** ① 보험료의 납입주기는 연납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자의 편의에 따라 6개월납, 3개월납, 2개월납 또는 월납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제2회부터의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중 앞으로 납입할 보험료에 대하여 계약자가 서면으로 보험료 납입주기 및 수금방법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해 드립니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갈음합니다.

④ 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연 7.5%>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이 보험기간중에 소멸 또는 변경되거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 선납보험료가 있으면 선납시에 할인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돌려 드립니다.

**제14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제15조에 규정된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대출을 서면신청한 경우 제31조에 규정된 계약자대출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대출되어 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까지의 이자(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자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합산한 금액이 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기타 계약자에게 지급할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관대출로 자동납입되는 보험료는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재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약을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그 청구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하고 이 납입최고기간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 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방문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기간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16조(해지된 계약의 부활)** ①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자는 해지일부터 2년 이내에는 부활을 청구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험료에 대해서 이 보험의 예정이율에 1%를 더한 이율<연 8.5%>로 계산한 이자)를 내고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 부활에 따른 회사의 책임은 회사의 승인이 있는 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됩니다. 이 경우 제1조,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을 다시 적용합니다.

**제17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     】 이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발생의 전후를 묻지 아니하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회사가 안 때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청약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
- ②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③ 제2항 ① Ⅱ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에는 【     】 이서 정한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2항 ② Ⅰ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9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손해가 제2항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8조(계약취소권 등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 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제19조(무효 또는 해지인 경우의 환급)** ①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이미 받은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이 효력상실되거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무효가 된 경우 또는 제17조제2항을 사유로 손해발생 이전에 해지된 경우에는 【     】 이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0조(환급금 등의 이자지급)** ① 회사는 제19조의 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예정이율 + 1%<연 8.5%>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환급금 등은 청구일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 손해의 발생

**제21조(손해의 통지)**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그러나 이를 얻기 어려울 때에는 사고발생의 목격자 등 인근주민의 확인서)
- ③ 그밖에 필요한 증거자료

**제23조(사망보험금)** ① 피보험자가 제3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을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24조(후유장해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3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된 경우에는 【 】 ↓ 각호에 정한 지급율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 】 ↓ 각호에서 정한 후유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③ 【 】 ↓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 】 ↓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 】 ↓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하고 그 합계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 】 ↓ 7, 8, 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과 발)의 후유장해에 대한 한쪽 각각의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의 60%를 한도로 합니다.

**제25조(보험금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 이미 지급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을 뺀 잔액을 드립니다.

**제26조(보험금 등의 수령방법의 선택)**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받거나 다음의 지급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①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분할지급
- ②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증액하여 지급하거나 동일한 비율로 증액하여 지급

- ③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이자와 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 ④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이자만 지급한 후 원금은 일시금으로 지급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 회사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해서 이 보험의 예정이율+1%<연 8.5%>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제27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제21조의 손해발생 통지 및 제22조의 보험금 등의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28조(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합니다.

**제29조(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① 피보험자가 제3조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장애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3조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3조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

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②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 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보험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제3조에서 정한 손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제30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의 80% 이하인 때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80%를 넘은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그 밖의 사항

**제31조(계약자 대출)**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회사에 제출하여 해약환급금의 범위 안에서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이 소멸되었을 경우에 제1항의 대출금이 있으면 상환기일에 관계없이 지급할 금액에서 그 원리금을 뺍니다.

**제32조(계약자배당금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3조(청구권의 소멸시효)** 이 약관에 의한 보험금청구권과 해약환급금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제34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모집인등이 청약과정에서 사용한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5조(보험계약자 교환)** 회사는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이용하기 위해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동의서에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에 기재하는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합니다.

- ①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②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 계약내용
- ③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등 지급내용

**제36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37조(다툼의 조정)** 이 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회사와 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8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39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보험수익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40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41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무배당에이스그린상해보험

특 별 약 관

## 1. 소득지원보상 담보 특별약관(1)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회사(이하 「 」 )는 에이스 그린 상해 보험 보통약관(이하 「 」 )라 합니다)의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 」 )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 일로부터 180일 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 」 ) 【 】 각 호에 정한 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일반사고로 입은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소득지원보상자금은 일반사고가 발생하여 50%이상 후유장해가 확정된 날로부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을 매년 1회씩 10년 동안(10회) 확정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1항의 소득지원보상자금을 보험수익자가 일시에 청구할 경우 이 보험의 예정이율<연 7.5%>로 할인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2. 소득지원보상 담보 특별약관(2)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회사(이하 「 」 )는 에이스 그린 상해 보험 보통약관(이하 「 」 )라 합니다)의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 」 )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 일로부터 180일 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 」 ) 【 】 각 호에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일반사고로 입은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소득지원보상자금은 일반사고가 발생하여 80%이상 후유장해가 확정된 날로부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매년 1회씩 10년 동안(10회) 확정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1항의 소득지원보상자금을 보험수익자가 일시에 청구할 경우 이 보험의 예정이율<연 7.5%>로 할인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3. 일반상해 의료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회사(이하 「 」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에이스 그린 상해보험 보통약관(이하 「 」라 합니다) 제3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 사고마다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의료비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의료실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4. 팔 및 손가락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회사(이하 「 」 )는 에이스 그린 상해 보험 보통약관(이하 「 」 )라 합니다)의 제3조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위 1.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 안에 어깨부위 이하가 절단되었거나 또는 어깨부위, 팔꿈치, 손목 및 손가락에 관절운동장애(이하 「 」 ) 【 표1】 후유장해지급률표 각호에 정한 지급률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 】 각호에서 정한 후유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④ 【 】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애정도에 따라 【 】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 】 각 장애분류별 최저지급률 장애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하고 그 합계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 】 7, 8, 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한 한쪽 각각의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의 60%를 한도로 합니다.

**제2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5. 교통상해 사망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회사(이하 「 」 )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아래에 정한 사고 (이하 「 」 )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①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승용구 (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②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② 제1항의 교통승용구라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 ②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③ 항공기, 선박 (요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 ④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경우는 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제1항에 정한 교통사고에서 제외합니다.

- ①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손해
-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 ③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제2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6. 교통상해 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회사(이하 「 」 )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아래에 정한 사고 (이하 「 」 ) 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 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 (이하 「 」 ) 【 】 후 유장해지급율표의 각호에 정한 지급율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①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승용구 (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②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② 제1항의 교통승용구라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 ②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③ 항공기, 선박 (요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 ④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경우는 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제1항에 정한 교통사고에서 제외합니다.

- ①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손해
-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 ③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 】 각호에서 정한 후유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⑤ 【     】 1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     】 1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     】 1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을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하고 그 합계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     】 1 7, 8, 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한 한쪽 각각의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의 60%를 한도로 합니다.

**제2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7. 교통상해 의료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회사(이하 「 」 )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의료실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합니다.

- ①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승용구 (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②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② 제1항의 교통승용구라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 ②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③ 항공기, 선박 (요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 ④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경우는 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제1항에 정한 교통사고에서 제외합니다.

- ①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손해
-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 ③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④ 제1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 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의 비용을 초과 했을 때, 회사는 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한도)**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하는 의료비 보험금은 1사고마다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8. 주말교통상해 사망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회사(이하 「 」 )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주말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 」 )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①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②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② 제1항의 주말이라 함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토요일, 사고발생지의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교통승용구라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 ②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 ④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경우는 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제1항에 정한 교통사고에서 제외합니다.

- ①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손해
-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 ③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제2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9. 주말교통상해 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회사(이하 「 」 )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주말에 아래에 정한 사고 (이하 「 」 )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 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 (이하 「 」 ) 【표1】 후유장해지급율표의 각호에 정한 지급율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①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승용구 (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②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② 제1항의 주말이라 함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토요일, 사고발생지의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교통승용구라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 ②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③ 항공기, 선박 (요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 ④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경우는 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제1항에 정한 교통사고에서 제외합니다.

- ①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손해
-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 ③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 】 각호에서 정한 후유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 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애 등급을 결정합니다.

⑥ 【     】 |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애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애정도에 따라 【     】 |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     】 | 각 장애분류별 최저지급율 장애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애에 대하여는 후유장애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⑦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애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하고 그 합계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     】 | 7, 8, 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애에 대한 한쪽 각각의 후유장애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의 60%를 한도로 합니다.

**제2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10. 주말교통상해 의료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회사(이하 「 」 )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주말에 아래에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의료실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합니다.

- ①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승용구 (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②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② 제1항의 주말이라 함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토요일, 사고발생지의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교통승용구라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 ②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③ 항공기, 선박 (요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 ④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경우는 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제1항에 정한 교통사고에서 제외합니다.

- ①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손해
-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 ③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⑤ 제1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 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의 비용을 초과 했을 때, 회사는 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

립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한도)**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하는 의료비 보험금은 1사고마다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11. 러시아워교통상해 사망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회사(이하 「 」 )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러시아워에 아래에 정한 사고 (이하 「 」 )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①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승용구 (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②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② 제1항의 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 ②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③ 항공기, 선박 (요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 ④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경우는 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러시아워라 함은 자동차의 운행이 집중되어 있는 시간대로써 하루 중 6:00 ~ ~ 22:00를 말합니다.

**제2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12. 러시아워교통상해 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나라(이하 「 」)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러시아워에 아래에 정한 사고 (이하 「 」)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 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 (이하 「 」)된 경우에는 【 】 후유장해지급율표의 각호에 정한 지급율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①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승용구 (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②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② 제1항의 교통승용구라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 ②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③ 항공기, 선박 (요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 ④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경우는 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러시아워라 함은 자동차의 운행이 집중되어 있는 시간대로써 하루 중 6:00 ~ ~ 22:00를 말합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 】 각호에서 정한 후유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⑤ 【 】 Ⅱ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 】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 】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율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㉔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하고 그 합계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     】 7, 8, 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한 한쪽 각각의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의 60%를 한도로 합니다.

**제2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13.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 사망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회사(이하 「 」 )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대중교통이용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 (이하 「 」 )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①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② 「 」차 하던중 일어난 교통사고
- ③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② 제1항의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다음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 ① 여객수송용 항공기
- ②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 ③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 버스는 제외합니다)
- ④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는 제외합니다)

**제2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14.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 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회사(이하 「 」 )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대중교통이용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 (이하 「 」 )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 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 (이하 「 」 )된 경우에는 【 】 후유장해지급율표의 각호에 정한 지급율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①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② 「 」차 하던중 일어난 교통사고
- ③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② 제1항의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다음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 ① 여객수송용 항공기
- ②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 ③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 버스는 제외합니다)
- ④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는 제외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 】 각호에서 정한 후유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④ 【 】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 】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 】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율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하고 그 합계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 】 7, 8, 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한 한쪽 각각의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의 60%를 한도로 합니다.

**제2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15. 가족담보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보험자 본인(이하 「 」라 합니다)의 가족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람을 피보험자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가족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 ① 본인의 배우자
- ②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중인 친족(민법 제777조)
- ③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16.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납입)** 보험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부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제3조(계약 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

## 후 유 장 해 지 급 율 표

후 유 장 해 의 종 류	지 급 율
1. 눈(眼)의 장애 1) 두 눈이 멀었을 때 2) 한 눈이 멀었을 때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로 된 때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장애나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8)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정상시야의 60%이하)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을 남긴 때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때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100 60 34 26 20 5 10 5 15 10
2. 귀(耳)의 장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 한 귀의 청력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4) 한 귀의 청력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5)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80 30 20 5 10
3. 코(鼻)의 장애 1) 코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20
4. 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애 1) 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3)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장애를 남긴 때 4) 이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이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6) 이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0 35 15 20 10 5
5. 외모(얼굴, 머리, 목)의 추상장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흉한 상처)을 남긴 때 2) 외모에 추상(흉한 상처)을 남긴 때	15 5

주) 지급율 : 사망.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임

후 유 장 해 의 종 류	지 급 율
6. 등뼈의 장애	
1) 등뼈에 고도의 기형이나 고도의 운동장애를 남긴 때	40
2) 등뼈에 중등도의 운동장애를 남긴 때	30
3) 등뼈에 중등도의 기형을 남긴 때	20
4) 등뼈에 경도의 기형이나 경도의 운동장애를 남긴 때	10
5)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6)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7) 고도의 추간반탈출증	20
8)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15
9) 경도의 추간반탈출증	10
7. 팔 또는 다리의 장애	
1) 두 팔의 손목 이상이나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팔의 손목 이상이나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00
4)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0
5)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 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0
6)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7) 한팔 또는 한 다리의 3 대관절중 2 관절 이상의 기능에 고도의 장애를 남긴 때	40
8)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 기능에 고도의 장애를 남긴 때	20
9)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 대관절중 2 관절 이상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애를 남긴 때	20
10)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애를 남긴 때	10
11)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애를 남긴 때	10
12)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애를 남긴 때	5
13)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40
14)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장애를 남긴 때	30
15)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0
16)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34
17)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20
18)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7

주) 지급율 : 사망.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임

후 유 장 해 의 종 류	지 급 율
8. 손가락의 장애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100
2) 한 손의 5 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2
3) 한 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20
4) 한 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둘째마디관절 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1 손가락마다)	8
5)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30
6) 한 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10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1 손가락마다)	5
9. 발(가락)의 장애	
1) 한 발의 리스프링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2
2) 한 발의 5 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 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10
4)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둘째마디관절 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1 발가락마다)	5
5) 한 발의 5 개 발가락 모두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20
6) 한 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8
7)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1 발가락마다)	3
10 흉·척부장기의 장애	
1) 흉·척부장기의 기능에 극심한 장애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100
2) 흉·척부장기의 기능에 심한 장애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75
3) 흉·척부장기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50
4) 흉·척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25
5) 흉·척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았을 때	10
6)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잃었을 때	42
7) 비장 또는 한쪽 콩팥을 잃었을 때	34
8)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26

주) 지급율 : 사망,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임



- ① 손바닥 반 크기 이상의 추상
- ②           cm 이상의 추상 반흔
- ③           cm 이상의 조직함몰

2) 머리

-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 ② 두개골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4. 외모의 추상

1) 얼굴

- ① 손바닥 1/4 크기 이상의 추상
- ②           cm 이상의 추상 반흔
- ③           cm 이상의 조직 함몰

2) 머리

-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 ② 두개골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추상

5. 등뼈의 장애

등뼈의 장애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만 보상합니다.

1) 고도의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이상의 전만증 또는 20°이상 측만 변형된 경우

2) 중고도의 기형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이상의 전만증 또는 10°이상 측만 변형된 경우

3) 경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로 인한 경도의 전만증 또는 측만 변형된 경우

4) 고도의 운동장애

척추체에 2분절 이상의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때

5) 중등도의 운동장해

① 척추체에 2분절 이상의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때

② 두 개골과 상위경추(제1, 2경추)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6) 경도의 운동장해

척추체에 골절 등으로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때

7) 고도의 추간반탈출증

추간반을 2마디 이상 수술 또는 하나의 추간반에 2번 이상 수술로 고도의 신경 증상이 남은 경우

8)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추간반을 1마디 수술로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 되는 경우

9) 경도의 추간반탈출증

의학적으로 추간반 병변이 확인되고 하지방사통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6. 팔, 다리의 1관절기능 장애

1)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완전강직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2) 고도의 장애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3) 중등도의 장애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4) 경도의 장애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7. 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을 때

첫째 손·

· 발가락의 제2지관절로 부터 상부 족,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손· 발가락 뼈를 잃은 경우

8. 손· 발가락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2) 반신의 완전마비

동측(同側)의 상하지의 운동마비, 즉 같은 쪽의 1하지와 1상지의 기능 전폐

3) 하반신의 완전마비

양측 하지기능 전폐, 방광기능 전폐, 직장조절불능, 성기능 등이 모두 전폐된 경우

【    】

## 해약환급금 명세표

- 해약환급금 없음.